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나572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명상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837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4. 14. 접수 제21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25400분의 6479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17다281626호) 위 판결이 2018. 2. 9. 확정된바, 원고는 민법 제187조에 정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8. 2.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렸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판결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시행자로서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신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를 소유자가 아닌 관계인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재결은 무효이다.

다. 공탁 선례 제20163호에 따르면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토지수용개시일인 2020. 4. 6.까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공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었다.

라.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등기예규 제3의 가.(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실효된 재결서 정본을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증 원본 또는 원고에 대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없이 이루어지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마. 이 사건 등기예규 제3의 라.(1)항 ①의 규정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결이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 중 125400분의 110421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상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인정하고, D, 원고, E을 각 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를 소유자가 아닌 관계인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08)이 2021. 10. 14.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원고가 2020. 4. 2.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첨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2020. 4. 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처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결 및 공탁 당시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유효하다¹⁾.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토지보상법 제42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한편,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탁금 수령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등기가 이 사건 등기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인정한 이 사건 재결서 등본 및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결이 실효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이 유효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기가 등기예규 제3의 가.(3)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등기예규 3의 라.(1)항 ①의 규정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또는 공탁)이 유효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원시취득 한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위 규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 토지 부동산의 표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아 1,254평방미터 중 대한민국

지분 41800분의 36807 중 일부(125400분의 6479).

1) 공탁 당시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상단에는 “주의사항: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사건(접수번호 제19091호), 소유권이전사건(접수번호 제19090호)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게 위 처리 중인 등기사건의 기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계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